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90호(2014. 10. 27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·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74호, 2014.9.30.)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신설

· [399] Cabergoline 경구제(품명 : 카버락틴정 0.5mg)

- 변경

·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 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)

· [439] Ranibizumab(품명 : 루센티스주)

· [639] Interferon β -1a 주사제(품명 : 레비프프리필드주사, 레비도즈프리필드펜, 아보백스주)

- 삭제

· [399] Cabergoline(품명 : 도스티백스정)

※ 붙임 : 고시 2014-190호 개정내역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528 (2014.10.2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